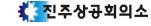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 알아보기



기업참여신청 전 필독사항!

1. 운영지침을 꼭 한번 읽어주세요.

- 받으신 메일 또는 진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회원기업서비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법인 본사, 지사 개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개별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 내 모든 사업자가 각각 개별 신청을 해야 하며 개별 신청으로 유형 표 참여할 시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피보험자 5인 이상" 여부를 사업자마다 각각 심사받아야 합니다.

3. (신설) 유형 표 참여 유의사항

	본	르 사	7	기사	유형 표 기		가능여부	
구분	피보험자	되이기노 신조	피보험자	되이지느 어조	본	사	지	사
	피보험자 5인 ↑	지원가능 업종	피보험자 5인 ↑	지원가능 업종	법인 단위	사업자 단위	법인 단위	사업자 단위
1	해당	해당	해당	해당	Ο	0	0	0
2-1	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Ο	0	0	X
2-2	해당	해당	해당	비해당	Ο	0	0	X
3	해당	비해당	해당	해당	Χ	X	X	0

-신청 단위에 따라서 인위적감원, 매출 등 심사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기준: 법인단위->모든 사업장, 사업자단위->개별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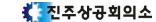
-기업에 따라 유리한 신청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청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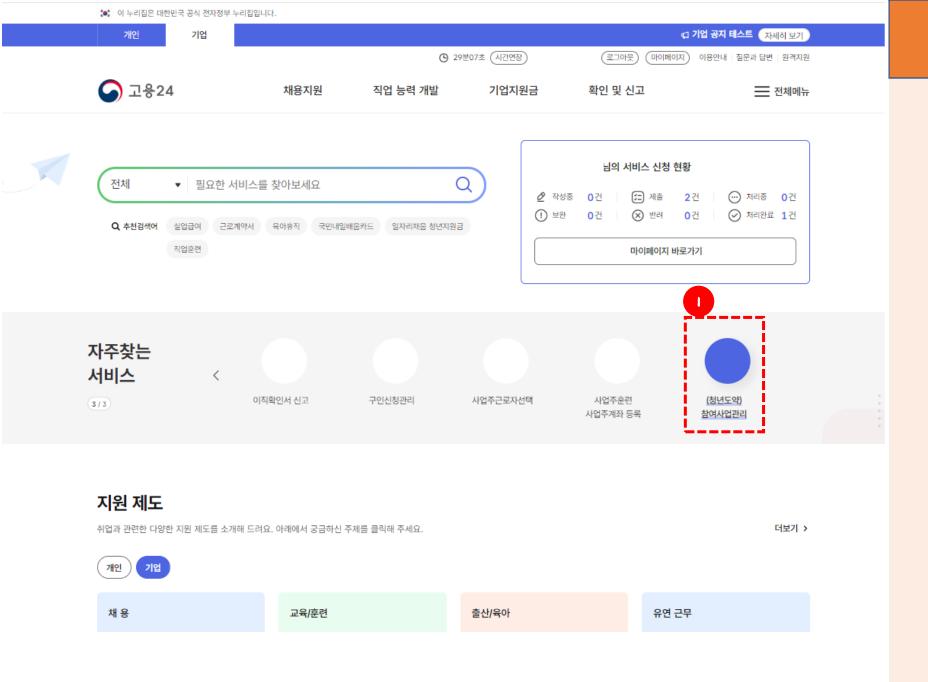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44 페이지 참조)

www.work24.go.kr

청년일자기도약장견금 기업참여신청방법(I)

-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접속
- 2. 기업 로그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2)

1. 자주찾는 서비스 (청년도약)참여사업관리 클릭



구인관리

참여 사업관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장년내일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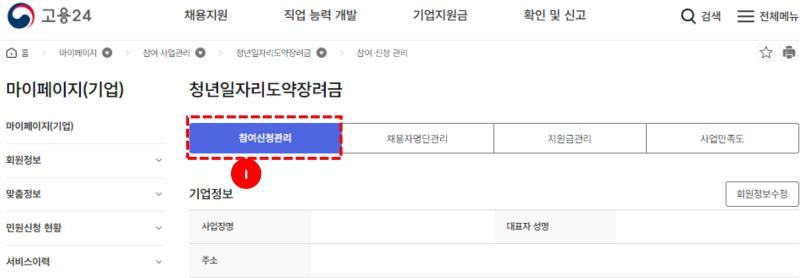
재직자 훈련관리

외국인고용관리

기업관리

상담내역

-(국민취업)일경험프로그램 관리



참여신청 현황



청 년 일 자 리 도 약 장 려 금 기업참여신청방법(ヨ)

1. 참여신청관리

- 2. [2025년 사업참여신청]
- 사업참여 신청 후
- <상세보기> 보완사항이 있을 시, 수정제출
- <변경신청> 채용계획, 담당자정보 등 변경신청
- <반려보완사유> 요청사유 확인 가능

대표 사업장 등록 시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견금 기업참여신청방법(4)

- 1. 운영기관 검색
- · 진주상공회의소 선택
- 2. 사업연도

 \sim

- · 2025년 확인
- 3. 관리번호 찾기
- · 클릭 시 피보험자 수 자동산정
- 4. 업종, 소재지, 피보험자수 정보
- ※ 피보험자 수정 불가 (지난 1년간 매월 말 피보험자수 합계)

단,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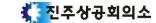
* 기본 원칙은 법인 단위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련 사업장 추가) 다만, 사업자 단위로 참여희망 시 관련 사업장 추가하지 마세요! (신청 후 "사업자 단위로 신청" 확인 전화주세요!)

관련 사업장 현황

			추가 +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관리번호 검색
피보험자 합계	명	설립일	
주소			

청년일자기도약장견금 기업참여신청방법(5)

- 1. 관련 사업장 현황
- 관리번호 검색으로 관련 사업장 등록



기준 피보험자수, 지원한도



청 년 일 자 리 도 약 장 려 금 기업참여신청방법(6)

1. 기준 피보험자수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 수정 불가
- 수도권 기업여부 →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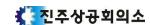
2. 매출액 등록 *홈택스 발급서류 필수* -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매출액, 매출액 시작일, 매출액 종료일 <2023년, 2024년 중 1개년도 문서 발급>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액 시작일, 종료일: 해당 1개년도와 같게 입력

※ 아래 기업은 [매출액심사제외]에 '체크'

- 1.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
- 2.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 3. 면세법인사업자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기업구분 *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 우선지원대상기업1 (피보험자 수 ☐ 지식서비스산업2 ☐ 청년창업기업 ☐ 고용위기지역 기업	평균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 문화콘텐츠산업 □ 지역주력산업
지원대상 기업 기준			~]

채용계획



2 채용예정인원 [*]	× 명	근로계약형태 •	선택
근무시간 •	주 x 시간 *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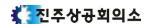
청년일자기도약장견금 기업참여신청방법(기)

1. 기업 구분

- ㆍ해당되는 모든 분야를 체크
-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체크

2. 채용 계획

- 채용예정인원: 2025년도 채용예정인원 기재
- 근로계약형태: 정규직/기간제 계약직 선택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가입 가능)
- 월급여 : 지급예정급여 대략적으로 입력(세전)
- ※ 채용조건 및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항목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담당자 정보



3 🥝 첨부파일

- 파일용량은 10MB 이하이며, 5개 파일 업로드 가능합니다.
- · 등록 가능 파일: gif, jpg, jpeg, bmp, png, ppt, pptx, dcc, docx, hwp, xls, xlsx, pdf, txt, zip, egg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증빙서류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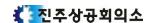
첨부파일 등록 원하는 파일을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세요.

청년일자기도약장견금 기업참여신청방법(B)

- 1. 채용자정보 등록
- 사전 채용한 청년이 있는 경우 '체크' 후 기재
- ※ 본 채용자정보 등록은 사전 채용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용도이며, 채용자 등록이 아닙니다.
- 2. 담당자 정보기재
- 진주상공회의소와 연락할 담당자 정보 기재

- 3. 첨부서류 등록
- · 사업자등록증
- · 매출액 증빙자료
 -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111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지식서비스산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 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 예	○ 아니요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이 예	○ 아니요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예	○ 아니요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이 예	○ 아니요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이 예	○ 아니요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이 예	○ 아니요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u>ା</u> ଜା	○ 아니요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 업장	୍ର ଜା	○ 아니요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이 예	○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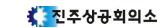
- 1. 지원제외 기업(해당여부 체크) · "예"를 선택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신청불가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1
2222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u></u> 확인
③ 취업애로청년 유형 ①~⑩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학인
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의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확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확인
⑨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학인
예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u></u> 확인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학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나,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금(장려금, 보조금 등 명칭 불문)의 반환을 명령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동 사업의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청년일자기도약장견금 기업참여신청방법(10)

- 1. 지원제외 청년(해당여부 체크)
- 해당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체크 바랍니다. "확인을 선택하지 않은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신청불가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신청 불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적격 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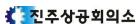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 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 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사업주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선택)					
사업주 일반전화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						

청년일자기도약장경금 기업참여신청방법(II)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 대표자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 "동의합니다" 미체크 시, 신청불가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래빗홀 주식회사(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제2조(지원내용)
-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청년이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부 정청구 처리지침('23년 별도 배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준용)
-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 사업참여 신청서에 대해 적격(승인) 처리된 경우, 본 협약서를작성한 것으로 본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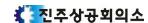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참여신청방법(12)

- 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 내용을 숙지 후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체크

2. 신청

-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운영기관에서 연락드립니다.



문의 처

기획조사부 김대호 주임 / 강성원 대리

Tel 055-753-0412

Fax 055-758-8220